

2003. 6. 30 (월) 10 : 00
제100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결과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2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6월 24일과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같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문 지식인들에게 군정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군정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형성과 청소년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전시설을 무료화하여 청소년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기회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신현기,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다목적홀을 사용할 시의 사용료 관련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중 사용료란의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비고란의 단서조항 『단 냉·난방비 별도』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획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온천지구가 3개 리에 걸쳐 있는 지역을 1개 단일 행정리에 편입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향후 일정 추진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종사자의 임용시 연령, 연가일수 등을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과 같게 하고, 관련 법규명을 헌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119구조대, 선거관리위원회, 복합형 복지시설 등의 입지선정을 현재의 안대로 하여야 하는 지와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의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